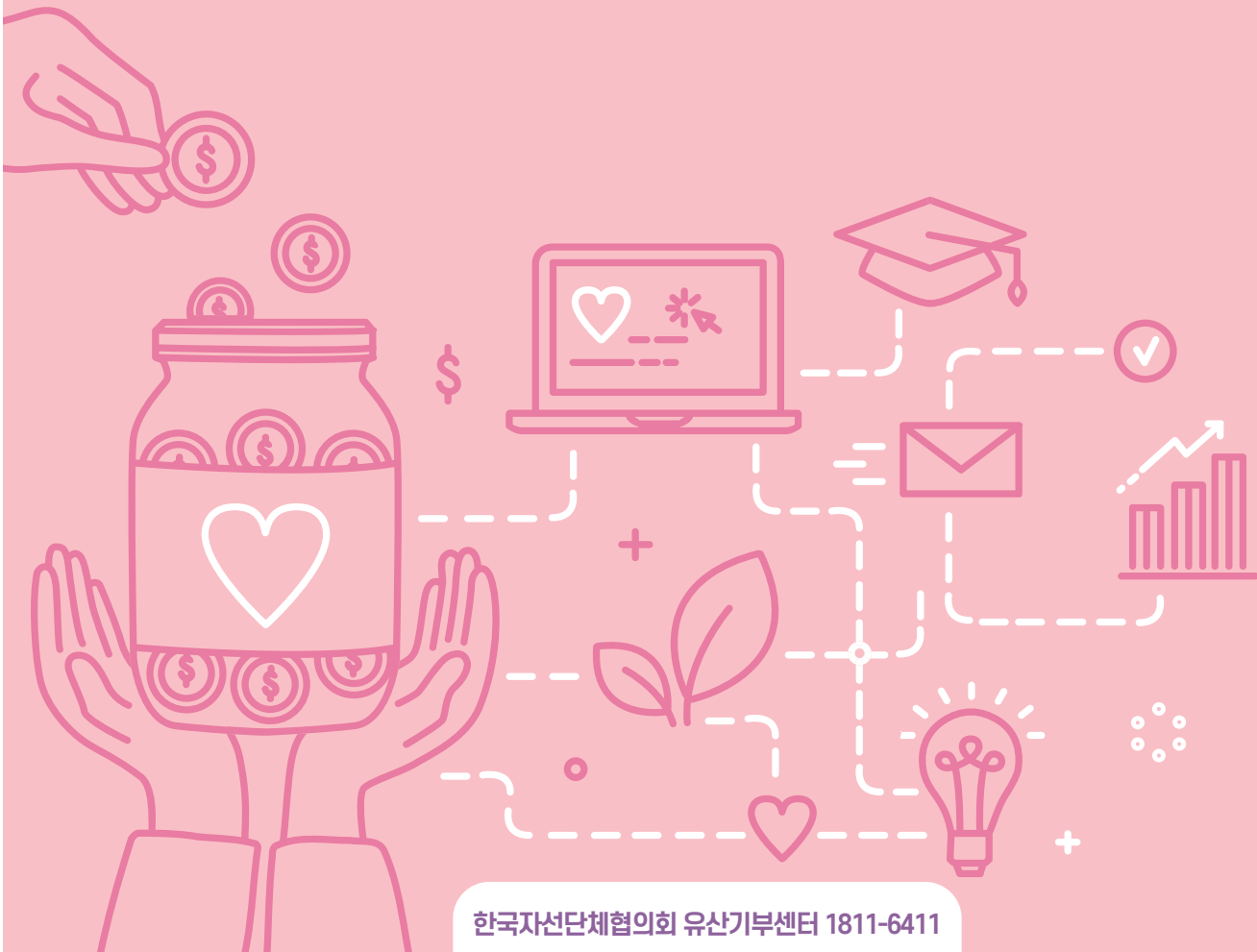


Q&A

유산기부에 관한
50문 **50**답



유산기부인식개선 캠페인

나누고 남기다



당신의 유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먼저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유산을 남겨주세요

고마운 누군가 있다면 또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엔,

**더불어 살아갈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
남겨주세요**

Contents

01 유산기부 전반	04
02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11
03 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15
04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19
05 세법	21
06 민법	27
07 기타	31

I 유산기부 전반



유산기부란 무엇인가요?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死後)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遺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와 관계없는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우한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도 유산을 기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기부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유산기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산기부는 왜 필요한가요?

IMF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 간 부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압박 요인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선단체, 공익법인 등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 수요를 경감할 수 있도록 복지다원주의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유산기부 등을 통해 개인 재산의 사회적 환원에 관한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제 혜택 등으로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의 자발적인 고액기부를 유도하고 확충된 재원으로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환경, 문화, 의료 등 사회적 공급과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실현과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법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세계기부지수 순위

	OECD 순위(36개국)	세계기부지수순위(146개국)
호주	1	2
뉴질랜드	2	3
대한민국	21	60
그리스	36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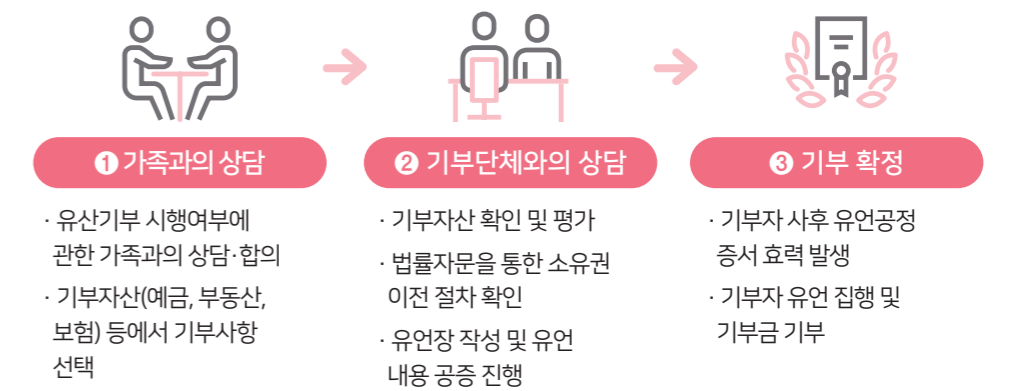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이 최근 발표한 '2018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60위,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에 불과하며 우리의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07년 0.84%에서 2017년에는 0.75%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의 비율은 0.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유산기부 금액은 총 22억 4,000파운드(약 3조 3천억원)에 달하며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인증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경감시켜주는 제도, 즉 레거시10(Legacy10)이 입법화되어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의뢰한 한국갤럽의 '우리나라 국민의 유산기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기부 의향은 26.3%로 나타났고 영국처럼 개인 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경감해주는 유산기부법을 제정할 경우, 응답자의 51.6%가 유산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족 분들과의 합의가 우선 제일 중요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유산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재산이므로 다른 가족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있나요?

내 재산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은 그 명의로 관계 없이 배우자와 공동소유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혼인 중이라면 모르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기부를 진행할 때 미리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산기부를 받는 단체는 반드시 공익법인이어야 하나요?

기부자가 속한 친목회나 스포츠클럽 등에 유산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부자의 의사만 명확하면 유산기부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나요?

유산기부를 대체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유언의 방식을 직접 손으로 쓴 경우(자필증서), 비밀로 작성한 경우(비밀증서), 공중인 앞에서 진술한 경우(공정증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고 유언을 한 경우(구수증서), 녹음한 경우(녹음유언) 등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각각의 방식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라도 유산기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유언

유산기부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이 가능한가요?

기부대상 자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에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어느 것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나 주식 등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산기부를 할 수 없는데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이를 기부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

또한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통주)의 일정비율 즉 대개 5%(성실공익법인은 10%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자선 법인의 경우 최대 20%) 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상의 주식을 기부 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유산기부와 생전기부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유산(遺産)」을 기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생전에 재산을 기부하는 방법과 유산기부를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기부의 목적인 재산이 「생전 재산」이냐 아니면 「유산」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단체에 시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매도한다거나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비싸게 매수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기부하는 방법도 유산기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기부와 유산기부는 그 목적 재산의 범위 및 기부방법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기부」가 있는 경우 그 이행은 기부자가 행하게 되고 그 "OO주식을 몇 주 기부한다.", "OO소재 부동산을 기부한다."와 같이 그 기부 재산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산기부」는 상속인이 기부를 이행하게 되고 또 "재산의 10%를 기부한다."는 방식의 기부, 즉 기부 당시에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비율만을 정하는 방식의 기부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보험금, 또는 타인 명의로 재산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신탁설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도 유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유산기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전기부의 경우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부를 하는 법인(기업)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대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종교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이며 법정기부금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기부하거나 세법이 정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기부하는 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부금인데 세법이 이처럼 기부 받는 기관 등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달리 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기부금에 대해 받는 세제혜택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모든 기부금이 다 비용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준소득금액과 일정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손금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바로 기준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일정비율이 서로 다른데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 50%,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 10%를 적용하여 한도를 구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이 기부할 시에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바로 기준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일정비율이 서로 다른데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 100%,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이 1천만원 미만 시에는 15%, 1천만원원 초과분부터는 기준소득금액에 30%를 적용하여 한도를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 시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하여 기부단체 간 평등한 입장에서 기부를 받음으로써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인 (기업)	기준소득금액 50%	기준소득금액 10%
개인	기준소득금액 100%	기준소득금액 1천만 ▲ 30% / 1천만 ▼ 15%

유산기부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산기부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가는 매매가를 말하지만,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있는 경우를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봅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순위는 매매 감정 수용 경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의 순서가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나 주식도 검색 가능).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럿 있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합니다.

소규모 아파트나 토지 건물 상가 등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실제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추후 공익법인이 이러한 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통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도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유산기부

II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II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란 무엇인가요?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는 기부자(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유언 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유산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2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 담당자와 상담한 후 유언 공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증인 2명, 유언집행자를 선정하고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 공증을 진행합니다.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유언자

1 유언자

-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하려는 자
-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증인

2 증인

- 유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시 참석해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유언 집행자

3 유언집행자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을 집행할 권리 의무를 가진 자로, 증인과 겸직 가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유언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이 정한 5가지의 유언 방식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 5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한 유언방식 5가지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직접 손으로 쓰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로 작성하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하기** (녹음에 의한 유언), **다른 사람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별다른 양식은 없지만 **민법 제1066조제1항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하며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 경우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하며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는데 이는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II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주소와 성명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또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공증 증인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자 외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III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이란 개인이 계약이나 유언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하는 권한을 개인이나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자가 금융회사와 자산신탁 계약을 맺고 자산관리를 위탁하면서 사망 후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게 될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자신을 자기생존 중의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사망후수익자'로 함으로써 사망 후의 재산분배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에 의한 신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언장과 달리 세대 간 연속적인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최초 상속인 지정만 가능하지만 신탁의 경우 할아버지가 자식 세대를 거쳐서 손자에게, 남편이 배우자를 거쳐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연속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도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의한 신탁은 신탁 자체의 효력발생시기가 위탁자의 사망 시이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과 구별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자체의 효력은 생전에 발생하고 그 수익권을 위탁자의 사망 시에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 원하는 신탁사와 상담해 유언대용신탁의 운용 여부 및 금액 등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② 일반 신탁상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③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 계약에 따라 자산이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를 진행할 시 생전에 나오는 자산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로 결정하셨을 때 생전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위탁자가 취하고 사후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회사가 기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일반적인 유언에 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탁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비율과 지급시기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부동산 등 자산을 신탁하여

- ① 생전에는 그 수익을 지급받다가
- ② 본인 사망 후에는 수익금의 25%는 공익단체에, 그 잔액의 50%는 배우자에게, 나머지 50%는 아들과 딸에게 25%씩 지급하고,
- ③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아들과 딸, 공익단체에 각 3분의 1씩 지급한다 등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그 시점에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고 실제로 공익단체에 기부되는 시기에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신탁보수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유언대용신탁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비슷한 사회환원 기부신탁이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은 미국의 자선잔여신탁(CRT)와 유사한 이른바 사회 환원기부신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공제를 인정하는데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 ① 특수관계가 없는 ②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 ③ 취소 불가능한 ④ 금전 신탁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의 공익신탁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선조직에 이전될 자산의 가치는 최소한 신탁재산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추정사유가 되므로 미국식의 공익신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III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비교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형식	유언공증의 경우 보증인 2인 등이 필요	금융기관의 계약서를 작성함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제한돼 있고, 각 방식마다 증인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함,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	고객과 은행 등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없음,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
수증자 지정	한 세대의 수증자 지정만 가능함, 즉 자녀, 손자, 제3자 등을 수증자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시 상속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음, 여러 세대에 걸친 부의 안정적 대물림이 어려움	여러 세대의 걸친 수증자 지정이 가능함, 즉 자녀, 손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의 수익자까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부의 안정적 대물림이 가능함
조건 및 기한	조건 및 기한부 유증도 가능함, 다만 조건 및 기한의 성취 시까지 상속 재산 관리가 어려움	고객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건 및 기한 설정이 가능함, 조건 및 기한 성취 시까지 은행이 상속 재산을 관리하므로 안정적인 상속 재산 보존이 가능함
내용 변경	유언공증의 경우 내용 변경을 위해서는 보증인 2명 필요	기존 계약서에 대한 변경 계약만으로 내용 변경 가능
효력 발생 범위	신분상 내용+재산상 내용	재산상 내용에 한함
유언 집행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서의 효력, 유언집행자 문제 등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은행이 계약서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 재산을 집행 처리함, 피상속인의 유지를 객관적으로 집행해 분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생전 재산 관리	유언서만 작성돼 있을 뿐 특별한 재산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생전부터 관리 가능하고 사후에도 본인 유지대로 관리 운용이 가능함

IV

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IV 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종신보험 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란 무엇인가요?

종신보험 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는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하여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 보험회사 상담사와 상담 후 가입할 보험을 선택합니다.



②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 담당자와 함께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의 수익자를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종신 생명보험이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로 하면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특별공제는 가능한가요?

기부자의 종신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생전에 지불하신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신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 이외에 가족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수익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V

세법





증여세란 무엇이며, 과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재산적 이익을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상속등기를 한 후에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산기부를 할 때 가족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할 때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 시 세금 부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유산 기부 시에도 기부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기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비용은

취득자인 공익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현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9조의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동법 제20조), 청소년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동법 제21조),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물론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그 기부 받은 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하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사후관리(事後管理)규정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상속받은 재산을 유산기부하려고 하는데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등기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에 의하여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 사실 즉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공익법인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관련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사인증여나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에 기부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서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등기 없이 직접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아래의 사례는 등기실무 상으로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 증여계약을 작성한 후 동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5. 4. 22. [등기선례 제1-395호, 등기선례 91.7.25.]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매매를 활용한 유산 기부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시가 100억 재산을 60억에 양도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 40억 원은 시가의 30%인 30억 원보다 크기 때문에 시가에서 양도가액 60억 원 및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한 37억 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상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8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대가와 시가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 형식이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허가 등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이 낮게 계산되므로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다만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물론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2)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8번,

3)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3번,

3)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4)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아파트를 유산기부하고 싶지만 제가 사망할 때까지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세법상으로 기부를 한 후에 기부자 및 그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시가 20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공익법인에 증여하면서 생존하는 동안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여성 동안의 부동산무상임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이때 1년간의 부동산 무상임대가액은 부동산가액 20억 원×연간 사용요율(2%)=4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실제로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제외되지만 부동산 무상임대가액 년 간 4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5년을 거주한 후 사망하였다면 4천만 원×5년=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저가에 양도하면서 생존 배우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자 및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그 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탁에 재산을 출연한 신탁자 즉 기부자가 그 신탁 재산의 운용수익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공익신탁 약정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법의 인가조건을 규정하는 공익신탁법 제4조 제8호에 위반되어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나누고 남기다

VI

민법





가족이 있어도 내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기부를 진행할 때 미리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가요?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됩니다. **(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가 된 경우에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부모 형제 자매는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으며 3촌 4촌 혈족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3/7, 자녀는 각각 2/7이 되고, 각각의 유류분은 배우자 3/14, 자녀 각각은 2/14이 됩니다. 그래서 14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3억, 자녀 각각의 유류분은 2억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산의 50% 정도인 7억 원을 기부하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7억 원×3/7= 3억 원, 자녀는 각각 7억 원×2/7=2억 원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의하면 유산의 50%를 기부하는 경우까지는 통상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에 의한 기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가산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사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산정 및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합니다. 여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빼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상속 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데, 여기에 상속인들이 각자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 가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와 1남 1녀를 둔 A의 총 재산액이 10억 원, A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2억 원, 빚이 5억 원이었다면 유류분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 가액은 **[총 재산액 10억 원 + 증여 가액 2억 원 - 채무 5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A가 이를 전부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라고 할 때 처의 법정 상속분은 7억 원에 대한 7분의 3인 3억 원, 자녀들은 각 7분의 2씩인 2억원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각 2분의 1이므로 처의 유류분 가액은 1억 5,000만 원, 자녀들은 각 1억 원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유증받은 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이를 침해한 자, 즉 유증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입니다. 다른 공동 상속인이 전부 유증받은 경우에는 유증받은 공동 상속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유언 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또 **유류분은 침해된 범위, 즉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상속 재산의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에는 유류분이 일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게 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 반환하여야 할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

VI 민법

유산기부 시 유류분 제도와 충돌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대원각 유산기부 사례

서울 성북동 '대원각' 주인이었던 고 김영한 할머니가 1999년 숨지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기증한 120여억 원의 유산을 놓고 상속녀와 유산 분쟁. 이는 외동딸 서모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서에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에서 '서씨에게 44억 원을 지급하고 서씨로 하여금 피고가 운영하는 글로벌 장학재단의 이사로 취임하게 한다'는 내용의 조정 성립으로 3년 만에 일단락 됨 (경향신문, 2003년 11월 25일자)

연세대 유산기부 사례

1997년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씨가 유서작성 날짜, 자신의 주소, 서명이 포함된 자필 유언서에서 '123억 원의 은행예금을 모두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 유족들은 '뒤늦게 발견된 유언장에 민법이 유서의 요건으로 규정한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노컷뉴스, 2008년 3월 30일자)

위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경우 유언자가 상속인들 전체나 일부에게 상속재산을 전허 남기지 않겠다고 유언을 한 경우에도 각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지분을 법에서 보호해주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산에 대한 고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권리를 더욱 중시하는 제도로써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제도적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인가요?

2006년에 처음으로 사전상속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10%의 가장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추후 상속이 발생 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전상속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60세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증여는 언제든지 가능)
- 증여재산은 총 30억 원을 한도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현금, 채권, 상장주식으로 해야 함
- 창업업종은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함
-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는 5억 원으로 함 (따라서 5억 원까지는 사전상속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음)
- 사전상속분은 실제 상속 발생 시 정산함

VII

기타





내가 기부한 유산은 어디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선단체들은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한 거버넌스 관리감독, 최소 1년 1회 이상에 걸친 사업의 효율성 평가 시행, 웹사이트에 재정,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공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선단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기부자분들이 해주신 유산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보건, 식수와 위생, 교육, 보호 등에 사용됩니다.

현금 이외에 부동산도 기부할 수 있나요?

매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재산이라면 현금이나 부동산 외의 재산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문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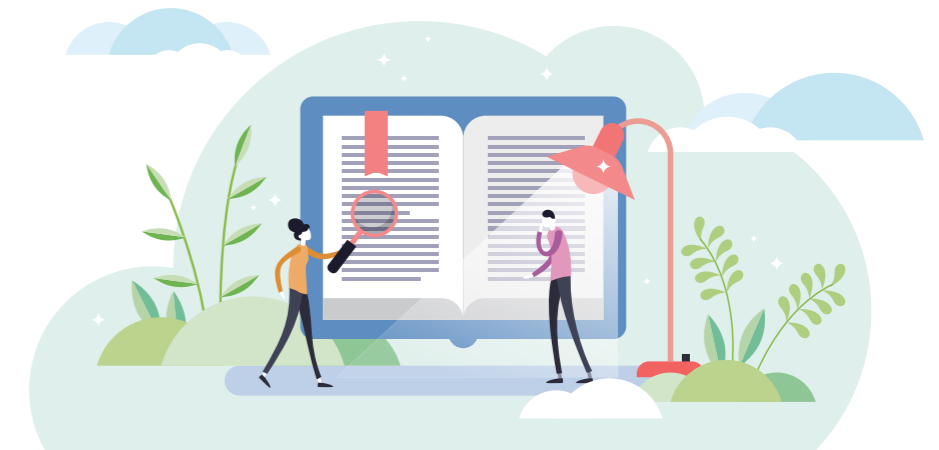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내국법인 주식의 5% 이상 취득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공익법인에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기부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기부 시 기부자에게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부동산 기부 시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부자산인 부동산에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나 피담보채권으로 인해 담보가 설정된 경우 기부단체가 이러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기부 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시켜 이러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부동산 평가의 문제를 둘러싼 과세문제를 해소하는 손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 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져야합니다. 다만 기부단체에 기부 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기부관련 제도인 Legacy 10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최근 유산기부 운동으로 Legacy 10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하자는 운동이며, 영국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Legacy 10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롤랜드 러드(금융컨설팅업체 핀스버리의 창업자)가 2011년 11월부터 '레거시 10(Legacy 10)'에 운동을 통해 영국인의 10%가 자발적으로 유산의 10%를 자산단체에 기부, 서약하는 유산기부 캠페인을 전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유산기부 금액은 총 22억 4,000파운드(약 3조 3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모금액의 1/4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325,000파운드(4억 8,750원) 이상을 상속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36%로 낮춰주는 등 유산기부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액의 감면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나 **유산기부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토종 NGO입니다. 1992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구호개발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지역개발사업에 매진해 온 결과, 굿네이버스는 창립 5년만인 1996년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하여 글로벌 NGO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UN과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이 주관한 MDGs Award에서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에 기여한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MDGs Award를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는 국내 NGO 최초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공식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UN 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민간외교의 역할을 주도해나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로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기아대책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 단체로, 1989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로 해외를 돕는 국제구호단체입니다. 기아대책은 굶주림을 겪는 모든 아이들과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어 또 다른 공동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외, 국내, 북한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스레기사랑나눔회

부스레기사랑나눔회는 “빈곤환경의 모든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1986년 12월 9일 1,000원의 작은 나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2년간 빈곤환경에 놓인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아동중심, 현장중심, 후원자중심의 원칙 아래 다양한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이후 절대빈곤과 혼란의 시기에 빈곤아동과 6.25 전쟁고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70년이 넘는 지난 역사 속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 대표아동옹호기관으로 성장했으며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이어가며, 모금전문가육성, 사회적관심을 유도하는 홍보.마케팅 강화, 보편적 아동 행복을 위한 권리 옹호 캠페인 전개, 후원자 서비스 강화 등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이브더칠드런은 2019년 아동구호개발 NGO중 처음으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자 에글렌타인 잭이 1923년에 작성한 아동권리 선언문은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의 모태가 되는 등 세이브더칠드런의 100년 역사는 곧 아동권리의 역사입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제1범주의 지위)를 인정받은 세이브더칠드런은 100년간 쌓은 노하우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국내에서는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 아동권리 침해 즉각 대응,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진 아동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도적 위기 대응 시 교육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유엔기구로 긴급구호 지원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단체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유일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재정 운영과 관련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감사 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3년 연속 만점과 크라운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일공동체

다일공동체는 31년전 한 그릇의 밥을 청량리역 광장에 쓰러진 할아버지 한분에게 대접하며 시작된 밥퍼 나눔운동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으며, 개신교 첫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세워 무의탁노인과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수술,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간호 및 치료 할 수 있는 다일작은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애주기별 국내전문복지사업과 지속 가능한 국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합니다.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지위를 부여 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과 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소외된 국내외의 아동과 그 가족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하트-하트재단은 국내에서는 장애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통한 체계적 음악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사업과,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포괄적인 교육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과 함께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에 창단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였으며 문화복지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랑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제47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설립자 해리 홀트 씨는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부름에 응하여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양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부인 버다 여사와 함께 모든 재산을 바쳤으며, 아이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궈왔습니다.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한부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GOOD PEOPLE 굿피플

1999년 2월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가난과 질병, 재난 등의 극심한 생존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구촌 소외 이웃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경을 초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문명과 정부기관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교육, 질병예방 및 치료, 긴급구호,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굿피플은 지구촌 소외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구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OXFAM 옥스팜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지난 77년간 전 세계 94개국에서 식수 문제 해결이나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현지 정부 또는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가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1972년 사회의 한편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아이들과 이웃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50여년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도움과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써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아직도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어린 생명, 선천적인 장애로 힘겨워하는 장애인,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는 청소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많은 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3년까지 한국의 어린이들을 도운 캠페션은 경제 수준이 높아진 한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 위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캠페션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캠페션은 전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결연하여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지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양육하며, 현재 25개국 18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영아 생존 후원 프로그램과 재난 구호,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취약 어린이 지원, 에이즈 예방 및 퇴치 사업 중심으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전쟁고아들을 위한 복지를 시작으로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생명에 대한 끝 없는 사랑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가정보호를 핵심가치로 일시보호, 양육, 의료, 교육, 장학사업 등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든든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아동을 비롯해, 미혼부모, 장애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를 통해 소외 이웃의 행복과 권리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 및 전국 5개 지부와 20개 시설, 1개 부속병원을 운영합니다.



글로벌케어는 의료인 및 전문인들로 구성된 국제개발 보건의료NGO로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게 의료와 복지의 손길을 전합니다. 글로벌케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글로벌케어는 1980년대부터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1997년 2월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인도적 지원의 경험과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구촌 이웃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국제개발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보건 의료에서 나아가 식수 위생, 모자보건, 아동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과 함께 발맞춰 성장해온 글로벌케어는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제개발 보건의료 NGO로서 지구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Safe Kids(세이프키즈)는 1988년 미국 국립 어린이 병원이 창립한 세계 유일의 국제 아동 안전 기구이며,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Safe Kids Korea(세이프키즈코리아)는 Safe Kids(세이프키즈)의 한국 법인으로서, 2001년에 설립되어(공동대표 : 박상용, 박희중, 이영구, 황의호) 어린이 사고 관련 Date의 질적 향상 및 사고예방 교육자료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장에서의 어린이 안전교육 및 각종 교육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증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에 관한 50문 50답

컨텐츠 자문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종원 (상속·증여 조세전문가)

인 쇄 2019년 12월 12일

발 행 2019년 12월 12일

발행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일하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 부귀빌딩4층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기부센터

연락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TEL (02) 735-0067~9 FAX (02) 735-0065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기부센터

TEL 1811-6411



유산기부에 관한 50문 50답

굿네이버스 · 기아대책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초록유산어린이재단 · 세이브더칠드런
다일공동체 · 밀알복지재단 · 하트-하트재단 · 홀트아동복지회 · NGO 굿피플 · 옥스팜코리아
동방사회복지회 · 한국컴패션 · 대한사회복지회 · 글로벌케어 · 세이프키즈코리아

한국자선단체협의회

031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 (교북동, 부귀빌딩) 4층

문의 : 전화 02-735-0067~9 | 이메일 : npokorea@npokorea.kr